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6일, 임의자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4. 9.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4. 9.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의자의원)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관련 안 제2조제7호, 제7조의2,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의2,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하였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44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1) 평가 분류에 따른 중점·간이평가제도 도입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함)가 있으며¹⁾,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도록 규정²⁾³⁾하고 있음.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18. (생략)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 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26개 분야 116개 정책, 개발기본계획) ex) 도시·군관리계획, 도로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17개 분야 81개 개발사업) ex)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개발제한구역(GB) 5,000㎡이상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0,000㎡이상 등 ex) 주택, 공장, 체육시설

※ 출처: 환경부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하여는 중점평가 대상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중점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공청회 의무화 및 환경부장관의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에 대하여는 평가 절차(주민 의견수렴 등 아래 표 ③~⑤)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평가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8. (생 략)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참고자료1. 환경영향평가등의 비교

[현행 및 개정안의 절차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전략 환경영향평가	①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중점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 + 공청회 의무화 + 환경부 지원
환경영향평가	②평가 항목·범위 결정 ③평가서(초안) 작성 ④주민 의견수렴 ⑤평가서(본안) 작성 및 협의	(간이평가 대상) 현행 절차 중 ③~⑤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①~⑤) 와 같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및 협의	(간이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 생략 가능 + (생략 시)환경보전방안 마련 (그 외 평가 대상) 현행 절차(평가서 작성 및 협의)와 같음

다만, 개정안에 따른 평가 분류 제도 도입에 대하여 ①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질적인 평가가 생략(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협의)되어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게 되므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② 이러한 평가절차 생략 시 작성되는 환경보전방안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③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리우선언, OECD 권고⁴⁾ 등 국제권고사항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환경 민원 유발과 갈등이 심화되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⁵⁾이 있는 바,

평가 분류 제도를 도입할 지 여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4) - 리우선언: 환경문제는 적절한 수준의 모든 관계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짐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OECD 권고: 환경적의사결정에 공공참여,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조
※ 출처 : 환경부

5) (사)한국환경영향평가사회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평가 분류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11조제4항 등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 여부는 각 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 안 제11조제5항 등에 따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최종 결정은 각 행정기관의 장이 행사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간이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그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⁶⁾.

둘째,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평가 분류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은 개정안에 따른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 및 그 외 현행 절차에 따른 평가 대상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을 중점평가 대상 또는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평가 대상을 두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대한 분류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은 간이평가 절차에 대하여 각 평가별로 유사한 내용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법제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영향평

6)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장관이 아닌 승인기관의 장 등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가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간이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협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재협의 규정 정비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한 사업계획을 대규모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업계획 등을 확정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이 지연·취소·실효되는 경우에도 사업 미착공과 마찬가지로 재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취소·실효되는 경우에 대한 재협의 생략만을 규정하고 있어 생략에 대응하는 재협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7)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재협의) ②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가 있는 등 재협의 의무와 생략에 대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사업이 취소·실효·지연된 경우에 대한 재협의 요청 의무를 신설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협의 규정 정비를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의무	① 사업을 착공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② 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③ 사업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 ②③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 재협의 요청 의무가 도출됨(환경부 의견)	현행과 같음 ※ ②③에 대하여 재협의 요청 의무를 법률에 명시
	재협의 요청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①의 경우에만 생략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①, ②, ③ 모두 생략 가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 의무	① 사업이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② 사업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을 경과한 경우	현행과 같음 ※ ①②에 대하여 재협의 요청 의무를 법률에 명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구분		현행	개정안
		※ ①②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상 재협의 요청 의무가 도출됨(환경부 의견)	
	재협의 요청 생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5년)이 경과하더라도 주변여건 변화가 경미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①, ② 모두 생략 가능

※ 출처: 환경부

다만, 현행법 제4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그 시행이 예정⁸⁾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제44조제3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다시 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 시행예정 법률, 개정안 비교 및 수정의견]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략) <u><신설></u>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생략)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승인등을 받아

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334호, 2025. 2. 21. 시행예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2. (생략)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현 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 정 안	수정의견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③ ----- ----- ----- ----- ----- ----- ----- -----다시 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 하게 변한 경우로 서 승인기관장등 이 환경부장관과	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개정안 제3항과 같음)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u>경과하지 아니한</u> 경우	1. (현행과 같음)	<u>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 하더라도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u> 1. ----- ----- ----- ----- ----- ----- ----- ----- <u>경과한</u> ----- ---	1. (개정안과 같음)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u>경과하지 아니한</u> 경우	2. (현행과 같음)	2. ----- ----- <u>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확정</u> 이 환경부장관----- ----- ----- ----- ----- <u>경과한</u> ----- ---	2. (개정안과 같음)

현행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	수정의견
④ (생략)	3.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 1항에 따라 시· 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⑤ (개정안 제4항 과 같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